2014년 2월 6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smba.go.kr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2월 5일(수) 12:00 이후 보도 가능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보 도 자 료

중소기업청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문의: 중기청 해외시장과 • 과장: 김대희(042-481-4465) • 사무관: 전세희(042-481-4575)

수출의 필수요건, 해외인증부터 준비하자
중기청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

-고부가가치 인증 최대 5천만원까지, 총 132.6억원 규모 지원, 2월 10일부터 신청·접수 -

【사례 1 : 인증준비 미흡으로 인한 피해】
최근 중국수출은 가공무역에서 완제품 수출로 변화하는 추세지만,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려면 CCC(중국강제인증: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인증마크가 필요하다. 22개분야 157개 품목('12.12월 기준)이 인증획득 대상이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인증절차는 6단계로 진행되어 과다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CCC 인증 취득에 대한 사전준비가 없는 A기업은 최근 중국세관에서 통관거부 등으로 인해 수출에 차질이 생기고 물류비용만 낭비하게 되었다.

【사례 2 : 해외인증 획득을 통한 수출증가】
네비게이션 생산업체 C기업은 수출을 위해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유럽공동체인증(CE) 등을 획득하고 관련시장 개척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인증획득 전에는 2억여원에 불과하던 수출액이 인증획득 후에는 33억원까지 늘었다.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최근 강화되는 기술무역장벽(TBT)에 대응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해외인증은 수출 통관의 필수 조건일뿐만 아니라, 해외 바이어들에게 품질보증의 징표로 여겨지는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하고 있다.

□ 이러한 중요성 증가에 발맞춰 2014년에는 **고부가가치인증지원**을 정규지원에 신설하여 **인증당 최대 5천만원**까지 해외규격인증획득 비용을 지원한다. (기존 : 의료기기분야만 최대 3천만원 → 변경 : 전 분야 최대 5천만원)

○ 또한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을 위해 내수기업간 경쟁체제를 도입, 전체 선정의 40% 규모를 내수기업으로 선정한다.

○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지원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및 수출능력구분에 따라 50~70% 비율로 차등 지원한다.

<지원비율>

구 분	지원비율	기 준
내수기업	70%	내수기업
수출기업	50%	수출실적 5,000만불 미만

□ 신청접수는 **2월 10일(월)부터** 이며,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총 5차에 걸쳐 모집 및 평가가 실시될 계획이며, 자세한 일정은 다음과 같다.

구분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4차 사업	5차 사업
신청·접수	2.10~2.28	4.1~4.30	6.1~6.30	8.1~8.31	10.1~10.31
평가·선정	3.1~3.20	5.1~5.20	7.1~7.20	9.1~9.20	11.1~11.20
협약체결	3.21~3.31	5.21~5.31	7.21~7.31	9.21~9.30	11.21~11.30

* 지원 차수는 지원 수요에 따라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또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2월 중, 각 지방청)**

* 설명회 일정 : 붙임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1 : 2014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공고문
붙임2 : 설명회 일정(안)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전세희 사무관(☎ 042-481-457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4 - 호

2014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2014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4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 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중 시험 및 인증 비용의 일부를 지원**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제외 사유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우대지원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다만, 회생인가 받은 자 또는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제외

2)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

3)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4)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단,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우대지원대상**

-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서 발급기업(유효기간 이내, 평가점수 60점 이상취득)
-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에 따른 홈쇼핑 판매기업

3. 지원규모 및 예산

□ 2014년 예산 : 132.6억원, 약 1,700업체 지원

1) 지원분야

지원분야		금액(안)	지원업체수(안)
일반규격인증	사업운영지침 【별표1】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대상 제품인증 분야	100억원	1,600
고부가가치인증	인증획득소요비용(컨설팅비용 제외)이 3천만원 이상인 제품인증	32.6억원	100

※ 분야별 금액·지원업체수는 사업집행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비율 : 지원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및 수출능력구분에 따라 50~70%(일반규격인증 최대 3,000만원, 고부가가치 인증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비율로 차등지원

구 분	지원비율	기 준
내수기업	70%	내수기업
수출기업	50%	수출실적 5,000만불 미만

- 동일 차수에 2개 인증까지 신청 가능

※ 일반규격인증 1개, 고부가가치인증 1개로 혼합하여 신청가능하나, 별도 시스템에 각자 신청해야 함(신청내용 동일)

※ 고부가가치 인증으로 신청하였으나 관리기관 확인과정에서 고부가가치 인증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명된 경우 탈락처리함(전환불가)

※ 일반규격인증, 고부가가치인증 전체 신청건수가 2개를 초과할 경우 신청건수 전체를 탈락처리함

- 사업신청기간 최대 3개월 이내(신청일 기준)에 해외규격인증을 이미 획득하고 협약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도 인증획득비용 지원
-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완료보고 후 인증획득에 소요된 총 소요비용에 수출능력구분비율을 적용한 소요산정액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정부 출연금으로 지급

4. 지원내용

□ **지원내용 개요**

○ 각 분야별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및 수출능력구분에 따라 50~70%(일반규격인증 최대 3,000만원, 고부가가치 인증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비율로 차등지원

○ 지원분야별 한도

(금액 : 천원)

지원분야	출연금한도			컨설팅 소요비용 한도
	최대한도	내수기업	수출기업	
▪ 일반해외규격인증*	30,000	70%	50%	사업운영 지침 참조
▪ 고부가가치 해외규격인증	50,000	70%	50%	4,400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사업운영지침 【별표3】, 【별표4】 참조

1 일반규격인증 지원

○ 사업운영지침 [별표1]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대상(218개 인증) 제품인증 분야

2 고부가가치 해외규격인증 지원

○ 해외규격인증 획득 시험·인증 비용(컨설팅비 제외)에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고가 인증의 경우, 최대 5천만원 한도까지 지원

○ 의료기기, 건축자재, 군사용 장비, 방폭(防爆), 건설기계, 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나, 인증비용이 높은 분야 위주 지원

5. 추진일정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4년 2월 10일(월) 09:00 ~ 2014년 10월 31일(월) 18:00까지

구분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4차 사업	5차 사업
신청·접수	2.10~2.28	4.1~4.30	6.1~6.30	8.1~8.31	10.1~10.31
평가·선정	3.1~3.20	5.1~5.20	7.1~7.20	9.1~9.20	11.1~11.20
협약체결	3.21~3.31	5.21~5.31	7.21~7.31	9.21~9.30	11.21~11.30

* 지원 차수는 지원 수요에 따라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http://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신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신청 구비서류

○ [별첨] 2014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업체 구비서류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 신청업체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인증신청] → [해외인증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 등록

- 고부가가치인증의 경우 동 사이트에 별도의 신청메뉴 마련

○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본점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마감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7. 선정평가 및 추진절차

□ 선정평가

○ 접수한 지방청에서 관계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를 실시

* 관계전문가 : 지방중소기업청 직원, 수출지원센터 소속 파견 직원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가점부여

- 지방소재(서울, 경기, 인천 제외)기업

-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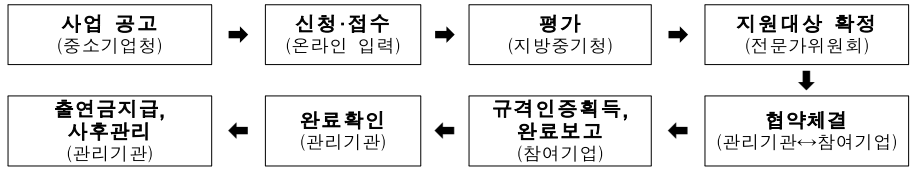
* KTL, KTR 및 지방중기청 시행교육

- 기타 혁신형기업(Inno-Biz, 벤처, 경영) 등

□ 지원대상 확정

○ 민·관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중복신청, 지원비용/규격인증의 적정성,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 등 지원대상 및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

□ 추진절차



8. 유의사항

□ 고부가가치 인증과 일반규격인증 간 신청접수마감 후 상호 전환이 불가능하므로 사전 견적에 유의

□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사에 대해 사전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 권장

○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 절차 진행을 권장

□ 동사업은 기업이 필요한 비용을 예산한도 내에서 일부(50~70%)만 사후 지급하는 사업임(인증획득 실패시 지원 없음)

○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일부 컨설턴트나 컨설팅업체의 허위 제안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 또는 관리기관으로 신고바람

9. 기타 고려사항

□ 사업은 원칙적으로 본 공고문에 따라 5차에 나누어 접수→평가→협약이 진행되나, **사업 공고 후 예산소진정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설명회(각 지방청별 2월 2~3째주 예정)는 추후 일정공지

10. 문의 및 확인

담당기관			전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해외시장과)		042-481-4575 4514
관리기관	일반규격인증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소기업인증지원센터)	02-860-1312~3
	고부가가치인증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중소기업수출인증사업단)	02-507-8123~6

<평가 및 증빙서류 관련 문의 :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청>

지방청명	전화번호	FAX	주 소
서울지방청	02)2110-6332	02)2110-0663	(427-700)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105호
부산·울산청	051)601-5161	051)341-0364	(612-704) 부산 해운대구 APEC로 30 BEXCO 제2전시관 3층 371호
대구·경북청	053)659-2245	053)626-8771	(704-833) 대구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청	062)360-9193	062)366-9671	(502-723)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청	031)201-6945	031)201-6949	(443-76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청	032)450-1132	032)818-8364	(405-849) 인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청	042)865-6151	042)865-6159	(305-343)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청	033)260-1672	033)260-1679	(200-944)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청	043)230-5374	043)235-2494	(363-883)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청	063)210-6465	063)210-6489	(560-86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청	055)268-2542	055)262-5012	(641-06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붙임2> 설명회 일정(안)

□ 일시·장소 : **'14.2.10(월)~, 전국 지방중소기업청**

일자	시간	해당지방청	장소	문의 및 접수
2월 10일(월)	14:00~15:30	전북중기청	3층 대회의실	KTR
	14:00~15:30	대구경북중기청	3층 대강당	KTL
2월 11일(화)	14:00~15:30	강원중기청	1층 별관 대회의실	KTL
	14:00~15:30	서울중기청	기표원 1층 중강당	KTR
2월 12일(수)	10:30~12:00	경남중기청	3층 대강당	KTL
	15:00~16:30	부산.울산중기청	부산문화컨텐츠 콤플렉스 3층 컨퍼런스홀	KTL
	14:00~15:30	인천중기청	별관 대강당	KTR
2월 13일(목)	14:00~15:30	광주.전남중기청	2층 대강당	KTR
	14:00~15:30	경기중기청	2층 대강당	KTR
2월 14일(금)	10:30~12:00	대전.충남중기청	2층 대강당	KTL
	14:00~15:30	충북중기청	1층 인식개선교육장	KTL

* 문의처 :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02-860-1312~3),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02-507-8123~6)
및 해당 지방청 담당자(공고문 연락처 참조)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